■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신설 2022. 5. 19.>

어업회사법인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 ] 주식[ ] 회사 해산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어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해산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해산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210㎜×297㎜[백상지 80g/㎡]